

---

第128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文化敎育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2001年9月5日(水) 午後2時

場所 文化敎育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東大門運動場商街2002年使用延長에 관한請願
  2. 體育施設管理事業所所管懸案業務報告
  3. 公報官所管懸案業務報告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敎育監出席要求案에 대한動議(李東秦 議員 外 1人 發議) ... 2面
  2. 東大門運動場商街2002年使用延長에 관한請願(崔明玉 議員 紹介) ... 3面
  3. 體育施設管理事業所所管懸案業務報告 ... 8面
  4. 公報官所管懸案業務報告 ... 49面
- 

(14시 53분 개의)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문화敎育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어제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 심의와 업무보고 청취를 장시간에 걸쳐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을 먼저 처리하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안업무보고, 그리

고 공보관 현안업무보고 순서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

1. 서울特別市教育監出席要求案에 대한動議(李東秦 議員 外 1人 發議)

○委員長 劉俊相; 안건상정에 앞서서 이동진 위원께서 교육감 출석요구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동진 위원께서 제안한 교육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어 교육감 출석요구동의안은 성립되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교육감 출석요구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참조)

서울특별시교육감출석요구안에 대한동의

(뒤에 실음)

.....

○委員長 劉俊相; 아울러서 9월 7일 14시에 개의되는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양당 간사와 논의한 결과 개의시간을 14시에서 10시로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東大門運動場商街2002년까지使用延長에 관한請願(崔明玉  
議員 紹介)

(14시 55분)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1항 동대문운동장 상가 2002  
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청원에 대한 취지는 간담회시 소개의원인 최명옥 의원  
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청취한 바 있어 생략하기로 하겠습  
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는  
속기록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

동대문운동장 상가 공개입찰추진 검토보고  
(뒤에 실음)

.....  
.....

○委員長 劉俊相;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한 체육시설관리사업  
소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인  
용입니다.

조금 전 위원장님께서 동대문상가에서 상인들의 청원건, 즉 2002년까지의 사용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청원건에 대해서 상정하시고 어제토의결과에 의해서 청원을 받아들이는 입장으로 정리를 하셨다는 말씀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저희 집행기관의 최종적 의견을 문의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청원건이 즉 우리 상인들이 연기하고자 하는 의견에 대해서 한 6가지 정도로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상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년대 초부터 자연발생적으로 즉 운영해 오던 것이 93년도부터 이에 대한 특혜의 문제가 제기되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 전에 했던 상인들이 지금까지 존속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요약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저희가 사용연장기간을 더 해 줄 수 없는 이유가 우선 법적인 문제에서 제기가 되겠습니다. 즉 법에 위반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까지도 법에 위반되어서 운영되어 오고 있는 사항이고, 하지만 아까 말씀 올린 대로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서 93년 이후부터 이미 일반공개경쟁으로 한 방침을 결정하고도 지금 현재까지 사용연장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온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도 법에 위반된 사항이지만 다시 연장을 함으로 인해서 법 위반사항이 계속 된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지방재정법 내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법 이 두 개 법에 저촉이 됨을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로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의회의 관계에서 얘기입니다. 사실상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던 것은 물론 자율적으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찾아서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93년도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제기되어서 이것이 발단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일반공개경쟁으로 방침을 결정하고도 준비기간을 두기 위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는 기간 동안에 청원이 들어와서 청원사항이 의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저희한테 권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즉 당사자들에게 권익이 보호가 되고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재정수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고려를 하라고 하는 그런 건의공고가 있어서 저희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요율을 현실화하면서 사용연장기간을 저희가 연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3년이 지난 96년도에 다시 또 정책회의까지 거쳐서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연기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다시 또 의회에서 저희한테 사용연장을 하라 라고 하는 그런 권고가 있다 하게 되면 사실상 업무의 일관성이라든지 의회와 행정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염려가 되어서 이것도 저희가 문제점으로 제시를 하는 바입니다.

세번째로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행정의 일관성입니다.

오늘까지 오는 과정에서 저희가 사용연장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 4회에 걸쳐서 시장의 방침을 받은 바 있고, 다음에 2차에 걸쳐서 정책회의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즉 동대문상가에 관한 사항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매우 큰 문제로서 많은 심사숙고를 해서 오늘 이 시점까지 왔던 사항이고, 마지막 정책회의가 결정되어서 사용기간을 연장해 주는

기간 중인 작년 7월에는 저희가 애초에 유예기간을 두면서 했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저희가 허가취소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구한 시장방침까지.....

○委員長 劉俊相; 설명식으로 하시지 말고 이 내용은 충분히 검토가 되었기 때문에 요약해서 6가지라고 하셨어요? 요약해서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 방침이라든지 정책의 결정에서 지금까지 왔던 사항을 다시 반복하기는 실무 공무원으로서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일단 반대입장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형평성 관계입니다.

어제도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저희가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 및 상가가 83개입니다만 현재 64개만 저희가 정책적으로 수의계약을 해 주고 있고 나머지는 일반공개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의 원칙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저희들은 충분히 상인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펴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바입니다.

93년도부터 이미 결정해서 했던 사항이 지금까지 유예를 해 왔다고 하는 사항은 상인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고려해서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더 연장은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신뢰관계입니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장방침 3번, 정책위 2번, 청원 들어와서 저희가 권고를 받아들여서 해 왔는데 최종적으로는 제소전 화해까지 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항인데 내년 1년

연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보장을 하느냐 이거예요. 법으로까지 다 했는데도 실질적으로 내년 1년 지난 이후에 이 양반이 순수하게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겠느냐 이거예요. 즉 신뢰성이 없다 이거예요.

따라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6가지 사항에 의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사용연장을 해 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金成奎 委員; 저 설명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그것은 우리가 충분한 토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되면 길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체육관리사업소 이것이 끝나면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하세요.

○金成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본 청원은 위원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번 간담회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를 통하여 본 청원에 대한 충분한 토의를 거친 바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찬반양론으로 의견이 양립되어 결과를 도출하는 데 매우 어려움이 컸으나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대로 우리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의견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의견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함

니다.

(의사봉 3타)

.....  
.....

(참조)

동대문운동장상가 2002년까지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소개의  
견서

(뒤에 실음)

---

### 3. 體育施設管理事業所所管懸案業務報告

(15시 05분)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2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인용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  
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박인  
용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교육위원회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  
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문제 몇 가지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하면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높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소장  
이하 전직원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서  
말은 바 업무를 충실히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 올  
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사업소 간부들을 간단히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 시설관리과장 한희호, 동대문운영관 황차웅, 목동운영관 박순철)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보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  
.....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金成奎 委員; 김성규 위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 대비 운동장 개·보수문제입니다. 당초 4개 운동장을 개·보수하고 시설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요예산을 17억 4,200만원 이렇게 편성했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여기에 예비비까지 포함되어 있네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 이후에 예비비가 필요해서 예비비를 저희가 다시 시장님한테.....

○金成奎 委員; 그러면 저희 의회에서 승인 받을 때는 14억 400만원 승인 받은 거예요? 본예산 자료에 있던데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것과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은 저희가 월드컵 관련해서 월드컵시설 유지보수를 하기 위한 예산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아까 보고드린 대로 월드컵 관련해서 시설을 개·보수해야 할 사항이 화장실, 샤워장, 그 다음에 임직원·선수들이 사용해야 할 대기실, 약간의 비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기존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유지관리비라든지 비품구매비라든지 하는 예산을 사용해서 거기다 투자한 돈이 14억이라는 얘기지, 별도로 이것만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방금 얘기하신 예비비관계는 지금 현재 이것과 관련 없이 동대문운동장의 의자가 많이 노후되었습니다. 1만석 이상이 망가졌기 때문에 이번에 마침 월드컵 공식운동장으로 그 당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를 해야만 우리가 그것을 치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런데 동대문운동장은 공식연습장으로 안 들어갔잖아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러니까 아까 말씀 올린대로 최종 확정된 것이 우리 서울에는.....

○金成奎 委員; 확정도 안 되었는데 시장한테 가서 방침까지

받아오고 그래요, 예비비에서 쓰겠다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것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8월 20일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그때 우리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군대를 예상후보지로 해서.....

○金成奎 委員; 아니, 예비비란 말이에요.

예비비라는 것은 확정이 된 다음에 가서 방침을 받아오든 시행을 하든 해야 되는 것이지, 예비비를 확정도 되기 전에, 8월 20일에 확정되는데 3월에 가서 예비비를 쓰겠다고 시장 방침을 받아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때까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동대문운동장이 공식운동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종 하는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경우에, 지금은 다행히 안 되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지정이 되었으면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사실상 시간도 늦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대로 지금 공식.....

○金成奎 委員; 봐요, 소장님. 예비비란 개념이 뭘니까? 만약을,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5개월 전에 가서 받아왔다?

아니, 예비비는 8월 20일 확정되었으면 그때 가서 받아와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런데 우리 월드컵에 관한 시설유지보수관계는 실질적으로 월드컵추진본부에서부터 9월 이전에 전부다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시기적으로 3월에 가서 예비비를 받았습시다만.....

○金成奎 委員; 그러면 결론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지금 현재 동대문체육구장이 공식연습장으로 지정이 안 되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안 되었습니다.

○金成奎 委員; 안 되었는데 거기다 예비비를 3억 3,800만 원을 갖다가 이미 사용했죠? 그것이 사실 아닙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동대문운동장에.....

○金成奎 委員; 나머지는 어디에다 썼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동대문운동장의 의자보수관계는 1억 8,000이고.....

○金成奎 委員; 나머지 1억 5,000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우리 소장님,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좋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 1억 8,000만원 의자교체하고 뭐하고 하는데 예비비를 사용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러면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도 안 되었고,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타당한 집행입니까?

그 답변만 하시라고, 시간도 없고 하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 당시 상황으로는.....

○金成奎 委員; 그 당시 말고 지금 현재 결과를 놓고 얘기해보자고요.

결과상으로 예비비를 집행할 만한 타당한 집행이었느냐고요.

제가 지금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안 하겠어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확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업무를 계획 세우고 이렇게 추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예비비를 갖다가 이것이 뭘니까? 공식연습장으로 지정도 안 되었고, 거기 활용도 안 할 텐데 거기다 예비비를 3억 3,800만원씩 해 버리면, 만약에 급한 사건이 터지면 어떻게 하렵니까.

이런 문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업무계획이나 업무추진에 있어서 정말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때 당시는 어떻고, 이제 안 되었으니까 안 되었다, 그런 식의 답변도 될 수 없고, 그런 식의 행정이나 업무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하여튼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앞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金成奎 委員; 행정감사 때 내가 물을 거예요, 따질 거예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동대문스포츠상가 입장 즉 말씀해 주셨죠, 반대하는 6가지. 의회에서 의원들이 그것을 모릅니까, 6가지 법에 위반되는 문제? 의회에서 93년도 지적된 문제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예요.

다만 여기에 있는 상인들이나 또한 이용하는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상인이나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직원이나 종사자들이나 모든 사람들 다 시민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못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잘못된 것이 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잘못했어요.

왜? 보세요. 저는 여기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고 내가 말씀드릴게요.

93년 11월에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특혜논란이다 해서 수의계약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되니까, 아까 그렇게 입장 말씀해 주셨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金成奎 委員; 지적이 되니까, 그해 11월 30일 시의 방침 제1406호로 96년부터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사용허가를 했던 말이에요.

왜 3년씩이나 유예를 합니까? 무슨 법적 근거로 3년씩이나 줬습니까? 여러분들 마음대로 3년 줍니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바로 하시면 되지, 기왕 할 바에는. 무슨 법적 근거로 해서 3년씩 유예기간을 줬죠? 답변해 보세요. 법적 근거만 얘기해 보세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3년이라는 유예기간을 줬느냐.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이것은 법적 근거라기보다는.....

○金成奎 委員; 여러분 마음대로? 웃지 말고 답변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11월 30일에 방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를 한다든지 준비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2년 정도하면.....

○金成奎 委員; 정리 준비하는 기간이 3년 걸려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기간은 2년 됐는데 2년 정도는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金成奎 委員; 2년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희가 95년 1월 1일부터 일반공개경쟁이기 때문에 93년, 94년 2년입니다.

○金成奎 委員; 어떻게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96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94년, 95년 2년입니다.

○金成奎 委員; 93년 12월이니까 2년 좀 넘네요. 94년부터 해버렸으면 94년 말이든 95년 1월 1일부터 공개경쟁입찰로 하겠다고 지방침으로 딱 정해 버렸으면 이 분들이 청원할 시간적인 여유를 안 줬지. 이것도 이 자료에 의하면 96년부터 예요, 96년 1월 1일부터도. 일반경쟁입찰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상인들이 그것을 짚싸게 알고 그 틈새를 이용해서 95년 12월에, 그렇죠?

95년 몇 월에 우리 의회에 다시 청원 낸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도를 했어요. 이런 많은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상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95년도에 의회에다 다시 청원을 냈어요.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생존권이라든지 생활권이라든지 보호할 목적도 있고 보호할 의무도 있어요,

저희는 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에서 검토해 보니까 어느날 갑자기 너무 많은 그 동안에 자료에 보듯이 자기네가 다 자기 자비로 지은 건물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어느날 갑자기 공개경쟁입찰해서 만약에 쫓겨난다 어쩐다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할 것 같다 해서 저희 의회에서 청원인들 권익보호추진면과 서울시의 재정수입증대 등 양측 이익을 충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정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에다 권고를 했어요. 그랬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시에다 권고를 했으면 시에서 그럴싸하게

96년 7월 3일에 정책회의도 하고 다 했네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했습니다.

○金成奎 委員; 해 가지고 이것 뭘니까? 96년 11월 7일에 수의계약하겠다고 시에서 방침을 세웠죠? 저희 의회의 권고 사항을 존중해 줘서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했어요. 그 때 당시 임대료를 127% 인상해서 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렇습니다.

○金成奎 委員; 127%라는 근거는 또 어디에서 나와서, 여기 보면 감사시 현장방문 조사자료, 과세자료 이런 것 취합해서 127% 인상해서 한 거예요? 이것도 타당합니까? 임대차보호 법이라든지 임대법에 타당합니까?

너무 법을 따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많다, 법에 위반이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 번 지적을 해 볼게요.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수의계약하겠다고, 정했으면 거기에 타당한 임대료도 인상해서 수의계약을 정해야지 127%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127%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법 몇 조 몇 항 해서 127% 인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나라에서 임대료를.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50/1000을 가지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金成奎 委員; 50/1000 이상이어야지, 120%가 뭐예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50/1000으로 하면 그때 할 때 재산의 감정가격의 50/1000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런데 127%는 왜 127%예요? 이것 법 위반 아닙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런데 50/1000으로 하게 되면 127.3% 보다 효율이 더 높습니다.



○金成奎 委員; 어떻게 해서 더 높이 나와요? 그때 당시 임대 아납니까? 수의계약이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임대인데요 수의계약 임대 해 주는 것이죠.

○金成奎 委員; 임대법 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방재정법이 있죠.

○金成奎 委員; 지방재정법 말고 임대법이라는 것이 있다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임대차 계약하는 관계법 말씀하시는 모양인데요.

○金成奎 委員; 임대차보호법. 주택은 임대차보호법이고 상가는 임대법에 있어요. 임대료 인상하는 인상요율에 임대법이 있다니까. 임대법이 있어요, 요율인상에 대해서. 그런데 127%라는 것이 나와서.

왜 내가 이것을 주장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 127%를 인상해 주고도 그분들이 전액 100% 다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재계약을 전부 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이 부분 제가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모르는 바가 아닌데 저희 지방자치가 갖고 있는 재산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돼요. 잡종재산, 행정재산 등 분류가 되는데 이 운동장은 그 중에서 행정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행정재산은 일반 잡종재산과 달리 대부를 해 줄 수 없고 사용허가라고 하는 입장으로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과 관련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관련법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임대를 해 주고 요율

결정을 하거든요.

○金成奎 委員;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사용허가를 해 주면서 사용료 징수내역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산가액의 50/1000을 대부요율로 정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金成奎 委員; 그러면 이게 96년 11월 7일에 수의계약 방침이 결정되어서 96년 12월 말로 끝나고 97년 1월 1일부터 127% 인상된 요율이 적용된 것이죠? 97년 1월 1일부터.

96년도에 수의계약 방침 정해서 그래서 97년 1월 1일부터 한 거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金成奎 委員; 그러면 97년 1월 1일부터는 127%로 인상해서 했는데 96년도에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 이전 요율로 했겠죠.

○金成奎 委員; 얼마만큼 많은 혜택을 줬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5년간 또 유예기간을 정했습니까? 무슨 근거로.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5년간 조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죄송합니다 또 반복이 되는데 최초에 93년도에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러니까 5년간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8년간이고 2년, 3년.....

○金成奎 委員; 96년도에 시 방침으로 수의계약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2001년 12월 30일까지 5년 아닙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96년 11월 7일에 수의계약 방침을 받아서 요율결정을 해서 저희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97년부터 적용한 것이 97년, 98년, 99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96년 11월 7일까지 저희가 방침을 받았습시다만 아까 말씀대로 96년 1월 1일부터 일반공개경쟁하는 것으로 최초로 방침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방침을 96년도에 적용을 결정했는데 실지 적용은 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 것이 아니고 96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적용을 한 것입니다.

○金成奎 委員; 3년 적용했으면 3년 후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했어야지 왜 또 2년간 유예라는 것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초에 저희가 결정할 때 시간을 적게 줘서 다른 여지가 없도록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여유 있게 준 부분도 저희가 생각할 때.....

○金成奎 委員; 99년 2월 19일에 또 정책회의를 했네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3년이 지나니까 거기에서 더 연장을 할 것이냐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저희가 정책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金成奎 委員; 여러분들끼리 정책회의를 한 것 아닙니까? 99년도에는 우리 의회 의사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물론 그때는 의회하고 관계가 없었는데.....

○金成奎 委員;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못된 것이지.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실은 우리 의회하고는 관계가 없었습니다만 동대문상가의 상인들은 계속해서 자꾸 저희한테 건의가 있었고 그런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金成奎 委員; 그러면 99년도부터 공개경쟁입찰을 딱 했으

면 3년간, 우리 의회에서 96년도에 권고를 하니깐 99년까지 했어, 3년간 유예기간을 줬어요. 그러면 3년 후에는 바로 공개경쟁입찰을 들어갔어야지 다시 2001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준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저희는 월드컵 때문에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지 2002년 5월에 월드컵이 없으면 이런 문제를 논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런 것 질문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제가 이런 잘못된 이렇게 여러분들의 행정적 모순 이것 내가 지적할 뿐이지 이것 논할 필요 없다니까. 2002년에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그 특수사항 때문에, 그분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뭐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때 당시 3년간 좋아, 의회에서 권고사항하니까 3년 동안 유예기간을 줘서 3년 후에 바로 공개경쟁입찰로 들어가 버렸으면 그때는 월드컵 이야기도 안 나왔을 때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의회하고는 상관 없이 정책회의 다 해서 2001년 말까지 유예기간 뒤놓고 2002년 5월에 월드컵이 있는데 2001년 말까지 있는 사람들 싹 몰아내 버리고 2002년 1월부터 소유권 환수해서 하겠다? 그러면 그 상인들이 순순히 물러납니까? 5개월, 6개월 내내 데모나 하고 몇 백명, 몇 천명 데모를 하고 수많은 외국인들이 관람하고 있는데 데모만 하고 있고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것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김성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노영석 위원님이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盧永奭 委員; 강서 출신 노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우리 김성규 위원과 어떤 토론

이 아무리 계속 되어도 깨끗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소장님 역시 부임하신 지 얼마 되지도 않고 과거의 것 지금 서류상으로 맞춰보려면 횡설수설하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와 같이 동대문스포츠상가가 지금 골치덩어리 현안문제로 대두되어 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렇습니다.

○盧永奭 委員; 이것이 지금 매끄럽게 되지 않을 거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도 말씀하신 것 같이 제소전 화해판결을 받고도 어떻게 될 건가.....

아까 6가지 이유 중에 신뢰성이 문제다, 한번 더 연장해 주더라도 그때 가서 또 그럴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셨죠?

또 여기 지금 그동안 상가업주들한테 1·2·3차 통고 다 보냈다는 얘기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집달관만 투입하면 되는데 다시 청원이 여기 또 왔다는 얘기지요.

오고도 이 청원을 들어주면 깨끗하게 될 건가 하는 것도, 분명히 소장님 말씀이 그것도 못 믿겠다, 못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소전 화해판결을 언제 받았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작년 12월 18일자로 확정.....

○盧永奭 委員; 그러면 작년 12월 18일자로 받았다면 체육관리사업소에서는 입주된 상가주인한테 어떤 조치를 했어요?

그 동안에 이 사람들이, 지금 김성규 위원과 토론하듯이, 66년도부터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66년도부터는 박정희 군사정권 하에서부터 어떤 특권의식으로 이것을 하다가 지방자치가 되니까 93년도에 다시 의원들의 발의에 의해서 이것도 공개입찰하자, 오랜 기간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또 걸렸단

말이죠.

96년에 또 논의되었어도 제대로 매끄럽지 않게 되었던 말이에요.

몇 번 이렇게이렇게 우여곡절을 겪다가 이제 금년 말이면 다 끝나서 깨끗하게 되어야 되는데 2002년 월드컵 때문에 월드컵 때까지만이라도 좀 봐 달라, 그런 청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사업소장 말씀은 그때 가서 또 나가겠느냐. 지금 같은 업무추진방법이라면 안 나가요, 그때 가도. 또 다른 구실을 찾지.

그러면 사업소에서 어떤 판결문대로 강제집행보다는 순리적으로 하는 것이 더 서울시의 모습도 깨끗할 것이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본위원회는 그 동안 소장님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알아요. 또 소장님 자신이 잘못 결정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것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이 어려운, 지금 상가가 83개에서 19개가 되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64개가 남았습니다.

○盧永奭 委員; 64개가 남았죠. 64개 소유자가 51명이죠, 명의자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盧永奭 委員; 어느 것은 두 개, 세 개가 겹쳐 있는데.....

이것을 매끄럽게 푸는 방법은 아까 말씀대로 우리 위원들도 원칙대로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위원이 상당수 있어요.

그러나 다수의견은 그래도 상가주인들의 청원을 들어서 어떻게든 좋은 방법으로 하자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견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신뢰성 문제 운운하면서 6가지 반대의견을

얘기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입주된 상가주인한테 인간적인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과거같이 박정희 시대처럼 군사독재시절 총 들고 하는 시절이면 여러분들이 강력한 권한이 있지, 제소전 화해판결을 안 받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제소전 화해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금은 시민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여태까지 조치를 잘 취했으면 청원이 올라 올 리가 없어요. 판결보다는 인간적으로 사업소장이 그 업주들한테 금년 내에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곧 강제집행이 있다, 하는 것을 예고했던들 이런 청원이 안 오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좀 가볍게 보셨는지 아니면 방침이 또 강하신지, 여하간 청원이 왔단 말이죠.

오고, 본위원회도 우리 위원회에서 세상을 많이 산 사람중의 하나예요. 그러면 입주한 사람을 바꿀 때는 여간 힘든 것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면 사전에 고지를 자꾸 했어야 되는데 9월, 10월, 11월 세 번 해 놓고는 할 것 다 했다, 이 사람들 나가겠지, 이것은 약간의 견해 차이일지는 모르지만 본위원회가 얘기 들으면 어림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위원회의 결정을 잘 받으셔서 사전조치를 충분히 해서 월드컵경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해서 이것을 순조롭게 풀 것인지, 그것은 소장님의 권한이니까, 잘 연구하셔서 서울시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 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적으로 내가 모든 고민을 하고 연구해서 결과가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이 와야지,

만일 이것으로 인해서 서울시에 큰 문제가 생긴다면 아마 소장님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못할 거라는 얘기죠.

본위원회는 동대문상가 상인들의 청원을 받아서 한 6개월이라도 월드컵경기가 끝날 때까지 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심 좀 해 보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준상 위원장, 길기연 간사와 사회교대)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朴柱雄 委員;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네, 박주용 위원님 자료요구하시죠.

○朴柱雄 委員; 박주용 위원입니다.

여기 잠실, 동대문, 목동 3개 운동장의 시설물 보수에 17억 4,200만원을 투입했죠?

거기에 3억 3,800만원의 예비비를 승인 받아서 썼다고 했는데, 아까 김성규 위원께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중요하고 긴박한 공사를 했기에 예비비를 사용했나 의심을 아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실, 동대문, 목동 3개 운동장에 17억 4,200만원에 대한 입찰현황과 계약현황을 자료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주요공사 추진실적 16건에 132억 9,500만원을 투입을 했습니다. 건별로 이것도 입찰현황과 계약현황을 본위원회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입찰현황과 계약현황이요?

알겠습니다.

○朴柱雄 委員; 그러시고 여러 건 중에서 수의계약은 일체 없었습니까? 전부 공개입찰이요?

수의계약은 수의계약대로 공개입찰은 공개입찰대로, 또 조



달청에 보낸 것은 보낸 대로 전부 현황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김성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金星煥 委員; 동대문스포츠상가 공개입찰과 관련해서 추가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저희들한테 제출하신 자료, 공개입찰 추진 검토보고에 따르면 그것이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소장께서는 그전에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98년 12월 초경이라고 보여지는데,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동대문스포츠상가가 유일하게, 당시는 유일하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여기가 수의계약으로 되고 있는 것이 특혜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경쟁입찰로 돌릴 것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었습니다.

98년 첫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지적했고, 그것에 따라서 99년 2월에 정책회의를 하신 겁니다.

갑자기 정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그에 따라서 정책회의를 하셔서 그러면 2001년까지 유예기간을 주고 그때 가서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정책회의에서 정한 거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죄송합니다.

제가 즉 검토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제가 파악한 것은......

○金星煥 委員; 다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왜 갑자기 정책회의를 했는지 원인이 안 나오잖아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여기 명시는 안 했습니다만, 그때 99년 2월에 당시 체육관리사업소장하고 있던 박승홍 소장이 그것을 정책회의에 회부를 했는데요......

○金星煥 委員; 왜 정책회의에 회부를 했겠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회부를 했는데, 하여튼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회부를 했는데 왜 회부했다는 그런 사항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유추했느냐, 98년이 만 3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3년이 넘어가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회의에 회부를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사항인데,

지금 98년 행감에 지적되었다고 그러는데요......

○金星煥 委員;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지적했어요.

당시에 김우석 국장이 있었고, 김우석 국장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었고, 그에 따라서 정책회의를 한 겁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金星煥 委員; 저희가 당시에 언제까지 이것을 공개경쟁으로 하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동대문상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해서 그때 지적을 했고, 시가 그래서 그것을 바꾼 겁니다.

그런 와중에 시가 다시 청원을 내서 다시 연장해 주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고, 또 청원인들의 사정이 절박한 것은 사실이나 의회의 제안을 스스로 뒤집는 측면이 있어서 저희 스스로 사실은 좀 안

타까운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계획이 2001년 12월까지 일괄해서 상가를 퇴거시키고 난 다음에 경쟁입찰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金星煥 委員; 여기 계획서에도 그렇게 나와있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몇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장 크게는 저희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동대문상가가 가지고 있는 재산가치를 시장경제에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임대수익을 높여서 세수입을 확대해서 그것이 우리 주민들 복리증진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취지가 가장 우선일 텐데, 그래서 수익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라고 하는 것이지, 저희가 거기서 오랜 스포츠매장을 운영해 왔던 사람들의 생존권을 박탈하겠다는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계획에 따르면 거기에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낙찰을 받을지 받지 못할지 모르는 모든 사람들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업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몇 개월 동안 이렇게 되면 실갱이를 하면서도 장사를 못할 것이고, 낙찰을 받을 사람들도 일단은 다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서울시가 공개경쟁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취지보다는 피해가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런데 혹시나 이것이 이번 기회에 동대문스

포츠상가를 완전히 다른 곳으로 바꾸기 위한 의도가 뒤에 숨어 있지는 않는 건지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런 것은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런 것은 확실히 없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확실히 없습니다.

○金星煥 委員; 문화관광부에서 동대문운동장 부근을 한류메카로 하겠다고 하고, 그것을 서울시와 협의 중이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난 것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을 들으신 것이나 협의하신 바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도 그런 것을 뉴스로 들은 바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金星煥 委員; 아직 협의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시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수익계약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경영과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수익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취지가 기본취지라고 한다면 현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방침은 빨리 수정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공개경쟁입찰은 최고가 낙찰이 원칙이라 하더라도 동대문상가를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에 때가 늦었다고 보여집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올라가는 청원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차피 대세는 공개경쟁입찰로 갈 텐데 공개경쟁입찰 후에 동대문상가의 스포츠매장을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서울시가 유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는 여기에다가 한류메카를 하겠다고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간이 꼭 스포츠상가만 들어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없다면 예컨대 밀리오레나 다른 데 있는 상가 중에 목 좋은 그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일반매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나름대로 거기가 광고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그 공간을 차지하려고 뛰어들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부러 기존에 스포츠상가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지켜줄 필요는 없지만 예컨대 정책적으로 그것이 스포츠상가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닌지, 문화관광국하고 협의해서 일부의 공간을 할애할 것인지, 문화관광국의 얘기대로 여기를 한류메카의 중심지로 바꾸고 스포츠상가를 다른 데로 보낼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시거나 고민하시거나 혹은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아까 말씀대로 저희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오늘 업무보고 때도 있었고 어제 간담회 때 보고는 완전히 퇴출 후에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저희가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보고를 드렸습시다만 어제 위원님의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방법을 금년 중에 하는 방법, 이후에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해 본 결과 나름대로 위원님 말씀이 매우 타당하다라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가 다시 별도로 일정은 수정을 할 용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차후에 사용문제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이것은 정책결정 할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은 우리 문화관광국의 체육청소년과를 통해서 접촉이 되는데 확인해 본 바 아직 그런 사항은 정식으로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안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봐서 직접 정책결정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입장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 관계 지휘부서에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는 일을 대비를 하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고 지적하는 사안이 집행부 입장에는 소귀에 경 읽기라는 생각이 가끔 드는데 속기록을 한번 뒤져보십시오.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위한 절차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으니 빨리 그것을 만들어서 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고작 만든 것이 이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컨대 다음번 임시회 때까지 저희 청원결과가 그 이전에는 확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청원결과에 따라서 청원권고안에 따른 회신을 포함해서 이것을 언제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인지,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어떤 절차로 할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기존의 동대문스포츠타운이 어떤 식으로 변모하는 것이 서울시 전체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지를 포함해서 종합적인 계획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 부분은 청원사항이 저희한테 넘어올 것이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그 문제를 가

지고 청원을 수용한다면 그대로 연기가 되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실제 공개경쟁 안 한 사항은 보고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金星煥 委員; 그렇게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청원의 요지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되 월드컵 직후에 해라 이런 것이고, 현재는 12월 말까지니까 12월 말까지 하든 7월 월드컵 직후에 하든간에 공개경쟁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원을 수용하든 안 하든간에 그것에 따라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金星煥 委員; 그래서 그것을 10월 임시회 때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吉基演 수고하셨습니다. 조양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趙養鎬 委員; 조양호 위원입니다.

지금 앞에서 선배·동료위원 분들이 동대문 스포츠상가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질의, 또 나름대로 대안들을 제시하셨는데 저는 중복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상가에 대해서 공개입찰은 원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의제기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상으로 공개입찰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같더라고요.

동대문운동장이 스포츠상가가 64개가 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것을 입찰대상이나 방법을 결정하려고 하는 어떤 안이 나와 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는 별도의 다른 안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다만 그대로 그 상태에서 다시 업자를 새로 바꾸는.....

○趙養鎬 委員; 그 상태에서 소유주만, 소유주인가요, 임차인인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임차인이죠.

○趙養鎬 委員;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64개 점포를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여기가 자리가 좋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최고가격을 쓴 업체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렇게 되면 이 자리를 흔히 얘기해서 대기업이라든가 또는 대자본가들이 독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어제도 그런 문제가 간담회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저희가 즉 검토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사실상 제안경쟁 내지는 지명경쟁도 할 수 있는 법 근거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것은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사유에 해당되었을 경우만 하는데 동대문상가의 경우는 지명경쟁이라든지 제안경쟁을 할 수 있는 사유를 즉 검토를 해 본 결과 해당이 없습니다.

없는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동대문상가의 경우는 공개입찰을 한다면 수입에 대한 임료기 때문에 최고가로 둘 수 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한 사람이 한 개 이상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개를 점유할 수 있게 되겠



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도 막말로 독점을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개입찰을 우리가 예상을 해 보면 대기업이라든가 대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64개 점포를 독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아닙니까? 예상할 수 있지 않겠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예상이 가능합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서 지금 제안경쟁입찰도 말씀하셨고 그러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64개 점포의 개개인별 한 임차인이 한 개의 점포 이상을 점유하지 못하게끔은 가능하지 않겠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 부분은 제가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것은 임대인 경우이고 일반 공사의 경우를 보면 그렇게 제안하는.....

○趙養鎬 委員; 제가 볼 때 제안이 아닌 것 같은데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제안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서 유추적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을 어제 즉 토론을 하다가 나왔는데 저희가 결정적으로 가능하다 가능하지 못하다 그런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개경쟁입찰하는 그 사항은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어느 특정인이 특혜를 누리는 그런 사항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인다고 조금 전에 우리 김성환 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취지라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독점해서 혼자 독식하는 그런 사항은 배제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관계법규를 즉 검토를 하고, 아니면 관계법규가 아니더라도 혹시 방침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하여튼 그런 방법을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趙養鎬 委員; 저희가 충분히 논의해 보고 심사숙고해 보면 64개 점포에 한 사람의 임차인이 한 개 이상의 점포를 임차한다는 것은 상도의상으로나 또는 공개입찰의 목적 취지에 위배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도 동대문 스포츠상가의 공개입찰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한 개인의 임차인이 또는 한 법인의 임차인이 한 개 이상의 상가를 임차하지 못하게끔 원칙이든 또는 방침이 되었든 그것을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을 해서 기존의 소상공인들을 몰아내고 대기업이나 대자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독점을 하게 된다면 스포츠상가의 발전을 위해서도, 또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서도 제가 볼 때는 별로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 주시고 그런 부분을 관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스포츠타운이 세워진 지 몇 년 되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63년도부터 형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여 년.

○趙養鎬 委員; 안전도검사 같은 것 해 보셨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희가 안전에 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법적으로 하는 과정입니다. 정밀안전검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봄, 가을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방법이 있고 외부에 용역

을 쥐서 하는 방법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동대문상가는 B 등급으로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趙養鎬 委員; B등급이면 안전하다라는 말씀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구조상에는 큰 문제가 없다.

○趙養鎬 委員;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잠실운동장도 B등급입니다.

○趙養鎬 委員;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동대문스포츠상가 공개입찰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모두가 이길 수 있는 윈윈게임으로 서로간에 합의 볼 수 있으면 합의 보고 협의 볼 수 있으면 협의 보고, 또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개입찰에 참여를 해서 참여의 폭을 넓혀서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공개입찰의 원칙을 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길기연 간사, 유준상 위원장과 사회교대)

○委員長 劉俊相; 다음은 김성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成浩 委員; 김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이 관장하는 체육시설이 총 몇 군데나 됩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희가 직접 직영하는 곳이 4군데이고 위탁이 3군데가 되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서울시 총괄.....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모든 체육시설은 제가 다 관장을 합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임대하고 임차하고 모든 시설비용이 1년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임대수입이 상가를 포함해서 약 64억입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이번에 체육시설을 개·보수하는데 충당됩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죄송합니다만 이 세입 갖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金成浩 委員;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야구장 임대라든가 그것은 공개입찰해서 한 것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야구장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야구장은 말 그대로 다목적이 아닌 야구만 하는 경기장이기 때문에 프로축구단에 야구단이 있는데 그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金成浩 委員; 정책회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심의위원회에서 하는지 우리 집행부 정책.....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러니까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관계공무원과 대외 민간인들 포함해서 위원이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런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임대수입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보수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면, 전부다 시민의 혈세로 나가는 거죠?

좋은 시설을 임대했을 때 충당할 수 있는 어떤 안이 안 나오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죄송합니다만 거의 저희 시설이 최고는, 동대문 같은 경우에는 60년이 넘었습니다만 하여튼 30년, 20년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부터는 수입보다

는 돈이 더 들어가는 유지관리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가는 입장에 있는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수입하고 지출의 타산을 맞추기에는.....

○金成浩 委員; 그 동안 수입을 많이 해서 적립을 했다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세수입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고치는 것 차이는 어떻게 돼요? 그런 데이터는 안 내봤어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희들은 일반회계에 의해서 세입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분해서 해 보지는 않았습다.

○金成浩 委員; 소장님, 그런 데이터도 한번 내보시고, 그래서 많은 시민의 혈세가.....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알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동대문운동장에 체육공원시설을 하는데 잔디밭 맨발로 걷는다든지 시설하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렇습니다.

○金成浩 委員; 9페이지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정책회의에서 결정된 것입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아닙니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소장님 직권으로 한 겁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죄송합니다.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만 거기에 씨름장이 있었고, 테니스장이 있었고, 수영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은 사실상 지난 보고에 나오시다만 한 30년 전부터 폐쇄가 되어 있어서 못 쓰고 있는 상태였고, 씨름장은

사실상 사용빈도가 연간 2·3일뿐이 안되어서 시설이 되어 있으면서도 사실상 유휴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활용방안을 아마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5월에 유휴시설 활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우선 방침을 결정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서서 그것이 확정되어서 예산확보 후에.....

○金成浩 委員; 그러니까 결정방침을 세운 것은 소장님이 하신 거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방침 받았지만 우리.....

○金成浩 委員; 계획수립할 때 어디에서 했느냐 이거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것은 우리 심사평가담당 관실에 정책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부해서 거기에서 결정한 겁니다.

○金成浩 委員; 소장님, 거기 참여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때는 제가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金成浩 委員; 그 전.....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 당시 소장은 참석했습니다.

○金成浩 委員; 그래서 그 결정을 해서 시장의 방침을 받아서 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金成浩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운동장에 모든 공원화하면서 테니스장 5면을 지금 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반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테니스장이 낫습니까, 배드민턴장이나 탁구장이 낫습니까?

그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죄송합니다만 제가 결정된 배경까지는 정확히는 모릅니다만 마침 그 때 시절에 효창구장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거기가 백범기념관 부지로 확정이 되면서 그 테니스장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테니스장의 확충이 표류해서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지금 이동진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여러 군데 하면서 그 중의 하나도 도봉의 창동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일환으로 많지는 않지만 조금 넓힌다고 하는 의미에서 2면을 5면 해서 그때 테니스장 유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成浩 委員; 제가 알기로는 테니스 하시는 분들의 상당한 로비가 서울시에 있지 않느냐 생각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효창운동장이 없어지면서 거기도 테니스장뿐만 아니고 정구장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동대문운동장도 테니스, 창동도 테니스, 테니스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제가 답변 올리기가 어려운 사항인데요.....

○金成浩 委員; 소장님 직권으로 배드민턴장으로 하든가, 정구장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 동대문운동장 공원 테니스장 관계는 확정된 사업으로 다음 달이면 완료될 단계에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金成浩 委員; 테니스장이나 정구장이나 똑같습니다. 네트만 가운데 묶어두느냐, 안 묶어두느냐, 높이만 좀 차이가 있지, 높이도 6cm, 그런 차이만 있는데, 유독 테니스만 전 서울 운동장을 하면 정구장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 들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金成浩 委員; 왜 그러니까?

소장님 직권으로 정구장 한번 만들어 주실 용의 없으십니까? 명칭만 바꾸면 되는데.

테니스인이 칠 수 있다 이거죠, 일반인한테 공개한다 이거죠. 네트가, 모든 것이 같으니까.

서울시에 정구장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배드민턴장.....

○金成浩 委員; 아니, 배드민턴장은 있겠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것이 테니스장을 만드는 건데요?

○金成浩 委員; 그러니까 정구장으로 고칠 용의는 없느냐 이 말이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지금 현재 만들고 있는 것이.....

○金成浩 委員; 그것은 테니스장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테니스장이고, 정구장을.....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소프트테니스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연식정구 말씀하시는 거군요.

○金成浩 委員; 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아, 제가 거기에 대한 지식이 문의한이어서 그런데, 똑같은 테니스장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成浩 委員; 우리 정구인들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110년이라는 정구역사가 있다가 테니스가 서구에서 들어와서 테니스를 했는데, 유독 서울시에 정구장이 한 코트도 없다는 말이죠. 정구장이라고 명칭을 내려서 한 데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테니스장을 빌려서 치고,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상당히 소외되었다고 할까.

그러나 전국체육대회에 가면 우리 서울시 연식정구 치시는 분들이 다 메달을 따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소장님의 직권으로 동대문운동장의 5면을 정구장으로 명칭을 고쳐줄 수 없느냐, 시장님께 건의해 볼 용의 없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제가 생각할 때는 연식, 소프트, 하드 그 차이인데, 내내 그 구장에서 네트만 놓고 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金成浩 委員; 그러니까 고쳐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명칭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고칠 필요가 없이 그냥 거기에서 연식하면 될 것 아닙니까?

○金成浩 委員;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명칭 하나 없는 것이, 우리 정구인들이 봤을 때 연식정구장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용단을 내려주실 수 없냐 이거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차이가 있는 모양인데, 일단 현재 제가 드릴 수 있는 입장에서는 우선 현재.....

○金成浩 委員;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느 동하면 명칭도 바꿔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이 딴 데로 가는 것 아니잖아요, 같은 동 안에서도. 그렇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네.

○金成浩 委員; 그러니까 우리 정구인들의 긍지도 살릴 겸, 우리 서울시에 연식정구장도 하나 있다, 그런 자부심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이 한번 시장님께 건의할 용의 없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제가 여기서 바꾸겠다 하겠다는 얘기는 못 드리고, 다만 혹시 시장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우리 연식정구하는 분의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金成浩 委員; 소장님, 대화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가서 보고를 하십시오. 정식으로 보고하셔서 바꿀 용의가 없느냐 이거죠.

하실 수 있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金成浩 委員; 가서 한번 보고를 해서 안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한번 보고는 할 수 있다 이거죠.

○委員長 劉俊相; 거기가 5면이잖아요. 5면이니까 1면 정도는.....

○金成浩 委員; 아니, 1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고, 시합이 경기가 안됩니다.

대통령배도 있고, 회장배도 있고, 세계선수권배도 있는데 전부 이것을 딴 데 빌려서 씩니다. 빌려서 써서 도저히 힘들어서.....

그렇다고 해서 테니스를 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

인들한테 공개를 하고 정구 안 칠 때 테니스도 칠 수 있고 그러니까 연식정구로 정식으로 코트장을 하나 해 주면 우리가 시합을 빌리지 않고 자체 것이니까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거죠.

그 용단을 우리 소장님께서서 한번 시장님께 건의해 볼 용의는 없나 이거죠.

시의원이 가서 로비 해야 됩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하여튼 제가 우리 김 위원님의 말씀이 충분히 인지가 되었으니까요, 그런 상태로 일단 오늘은 넘겨주시고, 아무튼 다음 기회에 한번 또 하겠습니다.

○金成浩 委員;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이동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李東秦 委員; 오늘 동대문운동장상가 사용연장 청원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까.

저는 사용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가급적 이미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자 합니다만, 아까 보고 하시는 과정에서 더 이상 사용연장을 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위법한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우선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우리 운동장은 공유재산으로서 지금 현재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허가를 해 주어야 할 입장인데요.

지금 보면 지방재정법 제61조에 보면 계약의 방법이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임차를 할 때에는 공고를 하여서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고 한 부분이 있고, 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법률 제7조에 보면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매, 임차 등등 할 때에는 일반공개경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단서조항을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지명경쟁 내지는 제한경쟁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李東秦 委員; 잠깐만요. 그러면 동대문운동장 상가는 그 단서조항에 포함이 되는 경우인가요, 아닌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위법한 상태에서, 임차관계가 위법상태에서 진행이 되어왔다, 이런 말씀인가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결론적으로, 원칙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거죠.

○李東秦 委員; 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업무보고내용 중에 한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잠실체육관 농구장 프로농구 연고팀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연고팀이 유치가 되게 되면 전용으로 사용하게 되나요, 야구장처럼?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시즌이 되면 시즌기간 동안에는 전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李東秦 委員; 시즌기간에는 전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다시 말씀을 올리게 되면, 평상시에는 일반인, 모든 체육경기를 비롯해서 일반행사까지 대관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남자프로농구의 경우에는 시즌이 금년의 경우에는 11월 3일 오픈이 되어서 내년 4월 말까지 한 6개월 정도 시즌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프로농구만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유치를 하면서 현재 아직 계약은 안 했습니다만 어떻게 구두상으로 확정했느냐 하면, 프로농구가 없는 기간 동안에는, 농구일정이 없는 기간동안에는 다른 일반행사와 다른 운동경기도 할 수 있도록 원칙적인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李東秦 委員;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요? 11월 3일부터 시즌 개시가 되니까 계약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나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우리가 종래에는 연고팀이 없었기 때문에 KBO 즉 프로농구 본부에서 연고지역이 아닌 경기를 유치를 했었습니다. 유치가 되다 보니까 평균 연중 50경기가 유치가 되었는데 프로농구가 연고지가 됨으로 인해서 연고팀에서 할 때는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한 20게임 정도가 증가가 되어서 70게임 정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李東秦 委員; 알겠고요.

그 다음에 잠실제2수영장 교육청에 무상임대해 준 것 있잖아요? 다이빙풀장은 기존 환경단체에 사용허가를 해 줬는데 환경단체가 어디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명칭이 푸른한강지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단체가 있습니다. 푸른한강지킴이 운동본부.

○李東秦 委員; 환경단체예요?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환경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다이빙하면서 스쿠버를 하기 때문에 서로 협의에 의해서 들어가서 한강의 여러 가지 퇴적물 같은 것도 수거해 오고 하는 그런 역할을 자기들이 주기적으로 합니다.

○李東秦 委員; 여기도 무상으로.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아닙니다. 연 4,500만원의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연 4,500만원. 레인이 몇 개나 되죠?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것은 레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이빙풀장이니까요, 조금 많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게 지금 정식 경기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시설이 노후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요, 잠실2수영장이.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래서 아까 보고를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금년 상반기까지 해서 약 1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5월 1일자로 교육청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해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李東秦 委員; 무상허가를 해 줬는데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설보수나 파손이나 이랬을 때 그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무상사용기간 동안에 말씀입니까?

○李東秦 委員; 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것은 교육청에서 자기들 예산으로 유지·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사용기간 중이네요? 여기서 확인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용하는 빈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요일별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요일별은 얘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초에 저희가 무상사용허가 논의가 있었을 때 말씀대로 교육장이 시장한테 선수양성용으로 해서 무상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서 그 때의 인원이 34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확인해 본 결과 평균 150명에서 100명 사이의 등록선수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오후 3시부터 21시까지 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데 100명 내외의 선수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중간에 낮시간에는 공백상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이 문제는 이미 사용허가를 무상으로 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유희시간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사실상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유희시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순회교육을 하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서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고 같이 대책에 대한 토의를 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요청했던 것은 5월 1일에

했는데 2개월 후에 7월에 저희한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보고를 못드렸는데 당초에 하면서 사실상 바로 제1수영장하고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다 보니까 그 동안은 제1수영장에서 선수들 양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2수영장이 생기면서 선수들이 그리 가다 보니까 바로 제1수영장의 세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토의과정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해 줘야만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논란이 있어서 결론을 그러면 1년간 운영을 해 보고 난 이후에 만약에 그로 인해서 제1수영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즉 결손이 생긴다면 방법을 강구하자라고 했던 사항이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무상사용을 5월 1일부터 하도록 했는데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시간이 남으니까 그 시간을 활용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제일 먼저 반발했던 것이 당초에 논의할 때도 자기들이 선수가 감으로 인해서 세입에 결손이 생기는데 그 부분도 보전도 안 해 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많은 세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매우 강한 반발을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희시간을 최대한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하면서 제1수영장측 세입에 결손을 안 주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져와라, 토론하자 해서 지금 현재 교육구청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네,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나중에 양 기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사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7분 계속개의)

○委員長 劉俊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 4. 公報官所管懸案業務報告

○委員長 劉俊相; 의사일정 제3항 공보관 소관 현안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진익철 공보관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報官 陳翼喆;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7일자 북경서울 문화무역관장에서 공보관으로 발령 받은 진익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준상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교육위원회 여러 위

원님, 제128회 임시회 문화교육위원회에서 공보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우리 공보관실 직원 모두는 시정의 각종 시책을 시민들에게 적기에 정확히 전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 공보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 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공보관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홍보담당관 전성수, 보도담당관 최임광)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

공보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보관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할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먼저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李東秦 委員; 한 가지만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어린이신문 「내친구 서울」 발행과 관련해서 지금 평월에 21만부, 7월과 12월, 방학하는 달로 생각되는데 49만부, 이렇게 발행을 하는데, 발행부수는 예산에 맞춘 건가요?

○公報官 陳翼喆; 발행부수는 평월에는 학급당 10부씩 배부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방학기간 동안에는 학급당 30부씩 배부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납니다.

○李東秦 委員; 좀 애매한 부수네요?

○公報官 陳翼喆; 방학 때는, 한 학급당 보통 인원수가 보통한 30명에서 40명 정도 됩니다. 평균 잡아서 한 40여명이 되기 때문에 방학 맞추어서 한 반에 한 사람당 전부 배부하기 위해서 49만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10부를 한 학급당 배부를 하면 학급에 따라서 10부가 누구한테 가야 될지도 불투명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내친구 서울」 이 애들이 보고 싶어하는 것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부수가 애매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49만부도 지금 초등학교 아이들 전체, 한 학급당 30부라고 한다면 그것도 전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체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40명에 육박하는, 학급당 평균인원을 40명 정도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부수 문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발행되기보다 예산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公報官 陳翼喆;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발행부수문제에 대해서 우선 기준을 아이들 학급당 인원과 맞추어서 한다면,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고요.

그전에 3월부터 매월 발행을 했으면 대여섯 번 발행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公報官 陳翼喆; 5회 발행했습니다.

○李東秦 委員; 애들이 이것을 실제로 받아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어디에 또 활용하는 뭐가 있는지, 사후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公報官 陳翼喆;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인기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李東秦 委員; 지금 판형 같은 것도 타블로이드판이 과연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맞는 판형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요.

타블로이드판은 상당히 큰 판형인데, 물론 학급에 놓고 활용을 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애들이 개별적으로 보기에는 아이들이 사용하는 책이나 또는 유인물이나 이런 것하고 비교해 볼 때 특히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판형이 적절치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타블로이드판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公報官 陳翼喆; 저희들이 새서울뉴스를 발간하고 있는데, 이 판 역시 타블로이드판입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李東秦 委員; 그러니까 정말로 애들에게 유용한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면 또는 애들이 보기 좋게 아이들 수준에서 어떻게 만들건가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블로이드판은 전혀 애들하고 맞는 판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새서울뉴스하고 비슷한 형태로 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1년 예산이 어떻게 잡혀 있죠?

○公報官 陳翼喆; 여기 7페이지에 보시면 1년 예산이 2억 5,000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서울시 1년 예산에서 보면 작은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공보관실에서는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公報官 陳翼喆; 그렇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래서 판형부터 내용까지 지금쯤이면 한번, 중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아이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내년도 계획은 어떻게, 내년도에도 계속 발행할 것 아니에요. 관행적으로 계속 이렇게 발행할 것이 아니라 올해 첫 시행한 사업이니까 여기에 대한 중간점검을 지금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잡아서 부수는 어떻게 할 것이고, 판형은 어떻게 할 것이고,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발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교육청하고 업무협조를 할 필요도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이런저런 홍보를 하겠지만, 그 달에 아이들한테 교육청에서 꼭 알려야 될 사안이랄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 같이 실어줄 수도 있는 문

제가 아닌가, 서울시정에 대한 홍보만이 아니고.

그런 측면에서 교육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公報官 陳翼喆;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구청을 통해서 협조 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8면에 보면 그와 관련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청 관련소식을 실고 있습니다.

○李東秦 委員;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단 시작을 했는데 이것의 필요성 여부나 이런 것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왕 시작한 것이니 만큼 그래도 아이들이 그나마 잘 볼 수 있는 형태로, 그리고 아이들한테 친근한 내용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중간에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지금쯤 해야 될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公報官 陳翼喆;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진 위원님.

○李康珍 委員; 기자설명회를 내실화를 한다고 하시는데 시정설명회 306회를 했다는 것이 금년도 통계입니까?

○公報官 陳翼喆; 지금 현재까지입니다.

○李康珍 委員; 시장이 그러면 122회나 시정설명회를 했어요?

○公報官 陳翼喆; 이게 시장님께서 직접 기자실에 내려와서 설명한 것 외에도 현장방문 숫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306회 시정설명회를 했는데 그 중

에 시장께서 122회를 했다고 하면 8월까지 했으면 240일, 근 이틀에 한 번 꼴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장행사에 동행 취재한 것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 뜻 아니에요? 시장께서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시정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설명을 했다가보다는.

○公報官 陳翼喆;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이것은 명백한 과장 업무보고가 되겠네요. 정정을 요구하면 정정해 주셔야 되겠네요.

○公報官 陳翼喆; 표현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설명회 조금 전에 지적하신 대로 현장방문 설명회가 117회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제목이 기자설명회인데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앞으로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무슨 미아지구 교통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든지 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직접 설명하신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시장께서 반부패국제회의에 참석했는데 그게 서울시청 출입기자들이 동행을 해서 동행취재를 했다, 그런 것도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公報官 陳翼喆;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네요. 쉽게 말하면 시정설명회가 아니고 시장과 동행 취재한 것이 122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정례설명회는 누가 해요? 주 4회 이상 한다라고 하는 것은.

○公報官 陳翼喆; 정례설명회는 실·국장들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서.....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주 4회 이상 해 놓은 정례라고 하

는 것은 정기적으로 한다 이 말 아니에요?

○公報官 陳翼喆;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석간신문까지도 고려해서 매일 아침 9시에는 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기준 같은 것이 있느냐고요?

○公報官 陳翼喆; 월요일에는 우리 정례 간부회의가 있기 때문에 화, 수, 목, 금 순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없어도 나와서 하는 것인가요?

○公報官 陳翼喆; 아닙니다.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李康珍 委員; 순서를 정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公報官 陳翼喆; 요일 자체를 화, 수, 목, 금으로 하고.....

○李康珍 委員; 그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보도자료 제공에 보면 약 8,344건이 제공이 되었는데 자치구의 보도자료가 5,800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평균 하루에 자치구에서 열 몇 건 넘게 들어온다고 봐야 되겠네요?

○公報官 陳翼喆; 네.

○李康珍 委員; 그런데 이 내용들이 거의 보면 구청장의 동정과 관련된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치구에 업무협조를 요구를 해서 보도자료 제공의 형식이 아니고 시청에서 일정한 형식을 갖춘 구청장의 일정을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면 자치구마다 보도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가져올 것이 아니고 시청에서 인터넷상에서나 아니면 팩스상으로나 어떤 형식을 취해서 공보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자료를 제공한다든지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은가요?

저도 시청기자실 복도에 가서 보도자료 놔 두는 데 보면



그냥 죽죽죽 우편배달 하듯이 넣어 놓고 가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보도는 안 되었는데 실적은 보도자료 제공은 8,344건을 했다, 시정설명회도 306회나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현실하고 안 맞는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본청하고 사업소도 2,300건 정도의 보도자료를 내는데 이 2,300건 중에 과연 제대로 보도되는 게 몇 건이나 되겠어요? 거의 시민생활 편의를 위해서 알리는 보도 이런 것들은 열심히 쓰는 신문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신문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도자료 제공은 시에서 총괄해서 한두 페이지에 걸쳐서 쓸 언론사는 쓰고 쓰지 않을 언론사는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정리를 해 주는 것들이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받아서 취합을 해 주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시고요.

지난주인가 어느 신문칼럼에 실린 것을 봤는데 서울시도 저는 크게 차이가 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가판신문이 나오고 난 이후에 데스크로 그 신문에 보도된 사항과 관련해서 이의제기를 한다든지 정정을 요구한다든지 하는 수준들이 애걸하는 형부터 시작해서 협박하는 형까지 있다라는 기사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公報官 陳翼喆; 한국일보.....

○李康珍 委員; 그 신문보도에 보면 서울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서 물어볼게요.

과장, 비판보도에 대한 능동적인 대응을 한다고 하셨는데

기사를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보도담당자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기사를 빼려고 하는 보도의 내용은 최고책임자 실명이 거론되는 경우다 이런 비슷한 내용으로 칼럼이 써졌던 것 보셨죠?

○公報官 陳翼喆; 네.

○李康珍 委員; 시에 실적이 70건인데 지금까지 70건이라고 하면 금년도에는 한달 평균 8건, 9건 정도 되는 건수가 능동적 대응을 해서 나온 것인데 그러면 앞으로 한 4개월 정도 지나면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많은 실적을 98년 97건, 99년 106건, 2000년 66건 이런 추세로 보면 가장 많은 실적을 아마 나타내실 것 같은데 여기 완전삭제 11건은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公報官 陳翼喆; 예를 들면 저희들이 사실과 전혀 다른 부분.....

○李康珍 委員; 주로 내용상으로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사례를 들면.

○公報官 陳翼喆; 예를 들면 서울시 119종합방재 전산정보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서울시 직원 2명을 업무방해혐의로 구속기소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과 전혀 다른 보도이기 때문에 정정보도 요청을 하면 사실에 입각해서 확인될 경우에는 완전삭제가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런 것은 팩트 자체가 워낙 명확한 것인데 그런 것만 있나요?

○公報官 陳翼喆; 그 외에 폭설이 내리고 난 뒤에 관계당국의 허술한 제설준비와 녹장대응이 교통체증을 심화시키고, 특

히 서울시내에 2월에 더 이상 폭설이 없을 것으로 보고 10cm 이상의 폭설에 필요한 제설장비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이런 부분이 나오면 이것도 역시 팩트하고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삭제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李康珍 委員; 글썄 그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텐데 특히 천재지변에 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나면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과 관련된 공무원들은, 심지어 그런 보도도 일부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집중호우 때 피해를 본 원인을 분석하면서 동 기능 전환이 잘못되어서 동 직원들이 없어서 더 능력대응을 했다 이런 보도들이 일부신문에 잠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그것도 일부 일리가 있다라고 볼 것인가,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동 기능 전환이 가져왔던 긍정적인 측면이 나 아니면 집중호우에 따른 능력대응의 원인은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든가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 모르겠어요, 완전삭제 11건의 자료를 지금 다 갖고 계시죠?

○公報官 陳翼喆; 네,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이 한 부를 저한테 쥐보세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보게. 일단 제가 볼 때는 과장, 비판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이라는 데 있어서 조금 기업체나 이런 데하고는 다른 방식을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부 기자들한테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서울시 정책의 최고책임자인 시장, 부시장을 제외하고 담당국장

들, 실장들 중에서 자기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내지는 보도를 부탁하고 이런 경우들을 별로 못본다는 것이죠.

○公報官 陳翼喆; 그런 경향이 조금 있습니다.

○李康珍 委員; 왜냐 하면 시정이라는 것은 국정과 마찬가지로 인데 그런 것 있잖아요. 국가에서 장관 임명하기 전에 누가 어떤지 하마평을 슬슬 흘려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돌아오는 피드백을 가지고 그것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시정도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 간부회에서 해서 결정 딱 되고 그것을 보도자료를 뿌려서 앞으로 서울시는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고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려면 언론이 홍보의 수단이 아니고 여론수렴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실·국장들이 준비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기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기사에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애로점도 있는 것 같더라는 것이 실리면 거기에 따라서 시민들의 반응이 올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바로 정책을 만들어 내고 책임성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시장 일인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의 테크노크라트들이 그 정도의 영향이 없지는 않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취약한 것 같고, 제가 과장, 비판보도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서 혹 서울시에서 과잉대응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예를 들면 그 기사를 통해서 여론이 수렴될 수도 있고 그

기사를 통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방향을 수정할 수도 있는데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가서 기사를 줄이고, 내지는 제목을 바꾸고 삭제시키라고 해 버리면 서울시는 비판 보도기사를 전혀 접하지 않겠더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거의 가판을 보고 가서 시정요구를 하는 것 아니에요?

○公報官 陳翼喆; 그렇습니다.

○李康珍 委員; 그러면 그 가판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해서 시정요구를 하는 부분들은 거의 공보관실 내의 분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실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하철공사의 홍보실이나 이런 데를 연락을 해서 빨리 해명자료를 갖고 와라 해서 가고 이런 식으로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딱 몰입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그 가판에서 그것을 놓친 직원들은 엄청난 중압감이 다가온다고요. 그 기사 하나 못 뺐느냐, 그 기사 하나 줄이지 못했느냐 이런 식의 중압감이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담당자는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을 경우가 많다고요. 그런 경우들도 많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과장이 되었든 비판 보도가 나오고 나서 그 보도사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내부적인 문제제기를 통해서든 언론중재 위원회에 제소를 한다든지 해서 보다 합법적인 공간들을 통해서 수정하는 것이 1순위인데, 제일 우선되는 순위인데, 가판에 나온 것을 지우고 삭제시키고, 내용을 고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또 왜곡된 언론보도를 시민들은 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겠죠. 좀 상황해졌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비판보도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로 기사가 전혀 터무니없는, 아까 말씀하셨던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사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경찰청 출입기자가 쓸 수도 있고, 어디에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 예를 들어서 서울시정에 대한 비판기사조차도 막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공보관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역량에 비해서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강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겠죠?

○公報官 陳翼喆;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 70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건전한 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전혀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실·국에서 관련부서에서 자료제공 등 적극적인 대응을 못함으로써 사실과 다른 부분이 나오면 나름대로 이런 식으로.....

○李康珍 委員;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조금 활성화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 신문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비판적 기사를 실었다고 하면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었든, 아니면 팀장이

되었든, 아니면 국장이 독자칼럼에 쓰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신문에서 몇 일자에 무슨 기사가 보도되었는데 서울시의 입장은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 기사들은 얼마든지 반론권을 언론에서 웬만하면 다 보장해 주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시민들 입장에서 봐도 직접 담당자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참 설득력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그것을 통해서 시청 공무원들이 훈련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만날 워선의 결재를 위한 보고서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시민들을 설득할 때 논리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자기훈련도 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公報官 陳翼喆;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나름대로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康珍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劉俊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끝내고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시교육연수원과 서울시교육청의 현안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34분 산회)

---

○出席委員

劉俊相 趙養鎬 吉基演 金成奎  
金成浩 金星煥 金判吉 盧永奭  
柳辰永 劉大運 李康珍 李東秦  
車星煥 朴柱雄 李聲九

○專門委員

尹炳國

○出席公務員

體育施設管理事業所長 朴仁龍  
公報官 陳翼喆